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113
----------	------

2019년 12월 2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3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출요지(서울특별시장)

1. 제출이유

- 장애인 등이 공연장 등의 이용 접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연장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연장·관람장 등에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 규정 신설(안 제5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(제출 취지)

- 본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또는 관람장 등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관람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서의 경사로 등의 설치 조항(안제5조제1항) 신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편의시설) (생략) <신설>	제5조(편의시설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u>

나. 관련 법령 검토 결과

- 개정 조례 관련 법령인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

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)은 '18.1.30. 개정을 통해 장애인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또는 집회장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.

< 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」 제4조 >

※ [별표 2]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: 3-가-(14)-(나)

편의시설의 종류	설치기준
(14)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,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	(나)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 <2018.1.30. 신설>

다. 조례 대상 기관의 무대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현황

- 현행 조례 (제2조제2호1))에 따른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대상시설은 ‘서울특별시 관리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)하는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’으로 2019년 10월말 기준 총 14개소임.
- 위 시설들의 무대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,
 - 총 대상시설 14개소 중 성북 청소년 수련관 외 6개소가 개정 법률을 충족한 시설 설치를 완비하였고, 시립 광진 청소년 수련관 외 6개소가 2020년 시설 설치 예정으로 밝혀 조례 대상시설들은 2020년 내에 법적 기준 및 조

1) 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"공연장 등"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을 말한다.

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파악됨.

<조례 대상 시설의 무대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 현황>

연번	시설명	개정법령 준수여부	참고사항
1	시립광진 청소년수련관	미설치	2019년 11월 설치 예정
2	성북청소년수련관	설치	
3	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	설치	
4	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	설치	
5	시립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	미설치	2020년 설치 예정
6	목동청소년수련관	설치	
7	세종문화회관	설치	
8	서울 남산국악당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9	블루스퀘어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0	삼청각	설치	
11	(문화비축기지T2공연장)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2	레드박스(플랫폼창동61)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3	서울 돈화문국악당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4	삼일로창고극장	설치	

*출처 :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

라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(장애인자립지원과)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(「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」(’18.1.30개정)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의 관람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단, 상위법에서 무대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2020.1.29.까지 의무설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기한 내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설치가 완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됨.

< 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>

제3조(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(14)(나)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1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제리, 송도호, 우형찬,
임종국, 권수정, 이호대,
김호평, 김소양, 이영실,
이성배 의원 (10명)

1. 제안 이유

- 장애인 등이 공연장 등의 이용 접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연장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규정 신설(안 제5조제2항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 조치 : 비대상 사유서 첨부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
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설치가
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편의시설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편의시설) ① (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 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 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.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 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5조(편의시설)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,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≍ 960,526천원

- 5년 동안 예상되는 총 비용은 960,526천원으로 연평균 192,105천원
- 전제
 - 서울시 모든 공연장에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('19년 10월 기준, 서울시 공연장은 총 19개소)
 - 기존 공연장에 휠체어리프트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확률이 높으므로,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
 - 공연장 1개소당 경사로 2개,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최초년도에 모두 설치하고, 차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방법
 - 경사로 설치비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창의관 강당(인재홀) 무대 경사로 설치공사비를 적용('19.8 계약)
 -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용은 다목적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구

매비용을 적용('19.9 계약)

-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비용은 '19년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장애인리프트 유지보수비용 적용

○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용 (안 제5조제2항)	808,526	-	-	-	-	-	808,526
	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비용 (안 제5조제2항)	-	38,000	38,000	38,000	38,000	38,000	152,000
	소계(b)	808,526	38,000	38,000	38,000	38,000	38,000	960,526
□ 총 비용(b-a)		808,526	38,000	38,000	38,000	38,000	38,000	960,526

* 물가상승률 미반영, 천 원 미만 반올림

다. 세부추계내역

○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≙ 960,526천원

- 산출방식 :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용(최초년도) + (연간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비용 × 4년)

-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용(최초년도) ≙ 808,526천원

= {(경사로 설치비용 × 설치개수) + (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용 × 설치대수)} × 공연장수

= { (10,377천원 × 2개) + (21,800천원 × 1대) } × 19개소

- 연간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비용 ≙ 38,000천원

=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비용 × 공연장수

= 2,000천원 × 19개소